

학생부종합전형 이의처리위원회 운영 규정

제 정	2010.09
개 정	2014.06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이의처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위원회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
- ②민원인이 입학사정관제전형의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에 불복할 경우 이의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답변
- ③입학 지원자가 요구하는 이의제기 중에서 해결되기 어렵고 특별히 처리할 필요있는 경우 심의하여 답변

제3조 (구성)

- ①위원은 입학처장이 임명하는 전임입학사정관, 내부위촉사정관으로 구성한다.
-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한다.

제4조 (절차와 방법)

- ①위원장은 제2조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심의 및 통보를 연장 할 수 있다.
- ③이의처리위원회는 심사에 따른 입학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 (준용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중 제목과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